

전남 농촌 아토피·천식 전국 최저

장흥 아토피 환자, 서울 중구 비해 16분의 1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일수록 알레르기 기성 질환인 어린이 아토피와 천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남 농촌지역의 경우 아토피·천식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영유아 및 소아(0~14세)의 지역별 알레르기 질환 실태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아토피 및 천식 발생률은 인구 만명당 31.8명과 36.1명의 환자 수를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장흥군은 아토피와 천식 환자 수가 2.0명과 4.5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서울 중구와 장흥군의 아토피와 천식 발생률을 단순 비교하면 아토피는 16배, 천식은 8배나 서울 중구쪽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0년~2006년까지 전국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토대로 1년에 2회 이상 '아토피 피부염', '천식'이라는 진단명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와 1회 이상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만을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아토피·천식환자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서울 중구에 이어 서울 종로구의 아토피와 천식환자가 인구 1만명당 13.8명, 15.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남구 11.0명, 12.0명, 영등포구 8.3명, 10.1명으로 집계돼 서울의 아토피·천식환자 비율이 높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장흥군에 이어 영광·완도·신안군의 아토피 발생률이 2.5명,

■지역별 0~14세 천식·아토피 발생률

행정구역	천식	아토피
서울 중구	36.1	31.8
종로구	15.8	13.8
부산 중구	8.3	6.0
대구 중구	7.1	5.4
광주 중구	6.9	4.7
서구	4.2	3.3
전남 나주시	3.3	2.7
완도군	3.9	2.5
장흥군	4.5	2.0

구례·보성·강진군이 2.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천식 환자 발생률의 경우 신안군이 3.1명으로 가장 낮았고, 나주시 3.3명, 해남군 3.4명 순이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아토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담양군 3.7명, 곡성군 3.5명, 영암군 3.5명으로 나타났다. 천식은 진도군 5.6명, 화순군 5.5명, 담양군 5.3명 순이었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토피와 천식 발생률이 전남보다는 다소 높았다. 아토피와 천식 발생률을 볼 때 광주 동구 4.7명·6.9명, 서구 3.3명·4.2명, 남구 3.0명·4.6명, 북구 2.9명·4.5명, 광산 3.4명·4.7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아토피·천식 발생률 전국 상위 25%안에 들었다.

연구보고서는 광산구의 경우 제조업 공장 밀집으로 인한 대기오염 요인, 동구의 경우 도시 지역 일반의 대기오염 및 도시화 요인으로 아토피·천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고 추정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설 앞두고 식품위생 점검
설 명절을 보며 앞둔 21일 광주시 북구청 소속 식품위생 점검반이 북구 운암동 모 슈퍼에서 생선 등 식품의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능 등급제 대폭 바뀐다

인수위 오늘 보완책 발표...점수 공개 검토

변별력 논란을 부른 등급제가 올해 수능부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200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부터 적용될 수능등급제 보완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등급제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 고3 수험생이 대상인 2009학년도 입시에서 바로 적용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제 보완대책은 영역별 등급표시 외에 백분위와 점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등급표시가 되기 하지만,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등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

장협의회(회장 정안용 경희대 입학관리처장·이하 협의회)는 21일 "수능등급제 보완을 위해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외에 원점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입학처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안용 회장은 이날 경희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급제는 과도한 점수경쟁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수능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대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초등생 앞에서 동료 교사 폭행

여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동료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수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여수교육청에 따르면 여수 모 초등학교 A(52) 교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4학년 교실에서 교무부장인 B(60) 교사를 폭행했다.

A 교사는 이날 교실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방학 영재수업"을 하고 있던 중 전 날 자신과 인사사고 관계로 말다툼을 벌인 B 교사가 교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를 B 교사를 수차례 때리고 학교 유리창을 부셨다.

이를 지켜봤던 일부 학생들이 이후 부모에게 "선생님들이 싸워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고 호소해 교사를 간혹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이 학교 교장은 "A 교사는 자신의 인사 사고가 불리하게 매겨졌다고 생각해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전화로 교무부장인 B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다음날 B 교사가 수업 중이던 A 교사를 찾아갔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B 교사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교육청은 진상조사 후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산낙지 먹다 기도 막혀 중태

○마트에서 산 낙지를 먹던 60대 남자의 기도가 막혀 119가 출동, 응급구조를 했으나 중태.

○21일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모 마트에서 김모(60)씨가 산 낙지를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진 것을 마트 종업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

○신고와 받고 긴급출동한 119구조대는 김씨의 호흡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후루경과 경자 등을 이용, 김씨의 목에 걸린 낙지머리를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응급처치를 받은 김씨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지만, 중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중.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형사보상 청구 시효 1년' 법원서 위헌 제청

5·18 유공자 보상 받을까 '주목'

5·18 민중항쟁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사보상청구 시효를 넘겨 국가보상이 무산된 5·18 유공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주목된다.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 무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

판사)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모(54)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형사보상법 제7조는 청구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보상법 7조는 형사보상의 청구시효를 무죄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연행돼 무기징역을 선

'합의 안해준다'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소송 중인 재판과 관련,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당사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살해한 점,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송씨는 동업자인 구모(50)씨와 경락대금·공사대금 등 법적 다툼을 벌이다 구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지난해 11월 15일께 임원중인 구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합의 안해준다'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소송 중인 재판과 관련,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당사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살해한 점,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송씨는 동업자인 구모(50)씨와 경락대금·공사대금 등 법적 다툼을 벌이다 구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지난해 11월 15일께 임원중인 구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입 행구지 않은 음주 측정 무효"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물로 행구지 않고 한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경찰이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물로 제거하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며 유모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때 최종 음주 일시와 장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